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6. 24.(화) 국무회의 종료(별도안내) 이후 배포 2025. 6. 23.(월)

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

- 갱신주기 현(現) 2년 → 1등급 5년, 2~4등급 4년으로 연장 -

현(現) 장기요양수급자인 **65세 이상 어르신** 및 **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**이 **기존 2년**(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, 2~4등급 3년으로 연장)**에서 1등급은 5년, 2~4등급은 4년으로 연장**된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**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(2025.6.24.)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,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**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** 위한 조치로, 이전에 **갱신을 마친 현 1~4등급 수급자는 모두**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**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~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.**

이는 **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**의 **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***, **현 유효기간**에 따른 갱신시 **대상자의 75%가 등급 변동이 없는**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**유효성을 유지**하면서도 **국민 불편을 최소화**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.

* 설문조사 결과('23.11), 응답자의 약 92%가 '갱신 유효기간 연장' 선택

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**일괄 반영**할 예정으로 **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, 수급자**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**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**(www.longtermcare.or.kr) 및 **모바일 앱**, **정부24 홈페이지**(www.gov.kr), **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**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임을기 노인정책관은 “이번 제도 개선은 **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**한 것으로, **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**하여 **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**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으며,

“**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**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**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**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<붙임> 1. 장기요양등급체계

2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신재형 (044-202-3490)
		담당자	주무관	김병관 (044-202-350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장기요양 등급 체계**

구분	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)	
	상태 및 점수	상태상
1등급	(전적인 도움필요, 95점이상~) ·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 ·개인위생, 체위변경, 배설물 관리 등 전적인 도움 받음	
2등급	(상당부분 도움필요, 75점~95점미만) ·하루 대부분 침상에 있으나 ·휠체어 등 이동시키면 세수, 양치질 등 일부 일상생활 수행 가능	
3등급	(부분적 도움필요, 60점~75점미만) ·도움없이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 이용, 엉덩이 밀기 등으로 이동 가능 ·일부 개인위생 활동 수행 가능	
4등급	(일정부분 도움필요, 51점~60점미만) ·보행기 등 도구 이용 보행 가능 ·집근처 외출시 도움 필요 ·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준비하여 일부 개인위생 활동 수행 가능	
5등급	(치매로 약간의 도움필요, 45점~51점미만) ·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과정에 지시나 지켜보기 도움 필요	
인지지원등급	(치매환자, 45점미만) ·신체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환자	

붙임 2 **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**

대통령령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”을 “판정된 등급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4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년”을 “4년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8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) ① ----------. ---------- 판정된 등급에 따라 ----------.
1.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: 4년	1. ---------- 5년
2.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: 3년	2. ---------- 4년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